

의안
번호

375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행 정 기 획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11. 22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나. 의안번호 : 제375호
- 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7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5.

2. 제안이유

- 체육진흥기금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」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을

신설(안 제14조제2항제2호)

- 1) 체육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인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
경륜사업수익금 중 「경륜·경정법 시행령」 제22조에 따른 수입금이
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기금의 재원확보가 시급
- 2) 체육진흥기금의 재원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으로
기금을 운영하기 위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8조,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」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 : 기획예산과와 세외수입 전출금 사항 협의되었음.

라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4. 09. 19. ~ 2024. 10. 10.

○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인 경륜사업 수익 배분금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체육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수입을 기금의 새로운 재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안 제14조제2항제2호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」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을 체육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확보하고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.
- 최근 5년간 체육진흥기금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, 2017년도를 기점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·경정사업 매출액이 감소하여 우리구 배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, 지출액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2020~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상승하고 있어 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한 상황임

<체육진흥기금 운용 현황>

[단위: 천원]

구 분		2024년	2023년	2022년	2021년	2020년	2019년
수 입	계	686,559	623,682	708,047	723,641	550,414	540,807
	기타수입 (경륜경정)	218,911	0	0	0	187,344	224,824
	보조금반환수입	0	16,795	0	0	0	
	전 입 금 (일반회계)	330,000	330,000	200,000	300,000	200,000	150,000
	이자수입	8,886	10,060	8,137	9,087	2,526	3,832
	이 월 액	128,762	266,827	499,909	414,553	160,542	162,150
지 출		548,295	494,920	441,220	223,731	135,861	380,264
잔 액		138,264	128,762	266,827	499,909	414,553	160,543

<경륜·경정사업 수익금 배분금 현황>

[단위: 천원]

구 분	2025년	2024년	2023년	2022년	2021년	2020년	2019년	2018년	2017년
배분금	200,000	218,911	0	0	0	187,344	224,825	362,930	479,309
전년대비 증감액	△18,911	218,911	0	0	0	△37,481	△138,105	△116,379	

※ 2021~2023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륜·경정 사업이 장기휴장함에 따라 수익금 배분금이 없음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수입을 기금의 재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여,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금액으로 이를 다시 체육 발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수익을 체육진흥에 재투자하는 형태로, 체육시설과 체육진흥의 연관성 측면에서 볼 때 체육진흥기금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그 재원을 타 회계에 의존하지 않고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」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으로 재원을 명시하여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 됨.